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10. . (제 회)	

대 학 설 립 ,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1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도권 집중, 재정악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 공동화 현상 심화, 지역 지식거점으로서 비수도권 대학원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정원 증원 시 4대 교육요건 적용을 배제하고,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조정 및 석-박사 간 정원조정이 용이하도록 학사정원 및 석사정원과 박사정원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하는 4대 요건(교지, 교사, 교원, 수익용기본재산) 기준 적용을 배제(안 제2조의3제3항 신설)
- 나.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(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)
 - 학사, 석사,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,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을 현행 2 : 1에서 1 : 1로 완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20. ~ 11. 2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1항 중 “제5항 및 제6항”을 “제3항, 제6항 및 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학(편제완성 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)”을 “대학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③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(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)이 대학의 특성화 방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원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별표 1의6 제3호가목 중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”을 “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·상호 조정의 기준) ① 대학(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제2항, <u>제5항 및 제6항</u> 에서 같다)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·학부 또는 전공(이하 “학과등”이라 한다)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,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	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·상호 조정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3항, 제6항 및 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「 <u>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(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)이 대학의 특성화 방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원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⑦ (생략)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46